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p>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p> <p>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p> <p>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p>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p>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p> <p>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p> <p>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p> <p>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p> <p>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p> <p>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p> <p>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p>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p> <p>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p> <p>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p> <p>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p> <p>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p>	<p>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p>제15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p> <p>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p> <p>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p> <p>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p>	<p>1. 납 취급 사업</p> <p>2. 수은 취급 사업</p> <p>3. 크롬 취급 사업</p> <p>4. 석면 취급 사업</p> <p>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p> <p>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p>

1. 보건관리자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는 목적은 보건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규모·보건관리자의 수

- 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5**)
-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두고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를 산정함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16조제3항)
- ③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800억원 이내,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00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16조제4항)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④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제3항, 시행령 제16조제5항)

3. 보건관리자의 업무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⑤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 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⑦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간호사인 경우)**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⑧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⑨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⑩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⑪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⑫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⑬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⑭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방법 등

- ①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제4항, 제18조제2항)
- ②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
- ③ 보건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제2항)
- ④ 사업주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제4항, 제18조제3항)
- 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증원·교체하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제3항, 제19조제2항)

(기출2013)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1차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업종의 B사와 C사를 사내 하도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B사와 C사는 각각 상시근로자 100명씩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① 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B·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C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보건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과 수급인 B·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C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위 ①항의 경우 도급인 A와 수급인 B·C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전체가 옳은 내용이다.**

(기출201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각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건설업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출20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함)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중대재해가 연간 5건 발생한 경우
- ②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용한 니트로벤젠(Nitrobenzene)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5명 발생한 경우
- ③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누출된 유해광선인 자외선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발생한 경우**
- ④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인 경우
- 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4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는 화학적 인자, ③은 물리적 인자 이다.
** 물리적 인자는 해당사항 없음**

(기출20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업무 아닌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겸직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 ②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상시 근로자 50명인 전기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인 사업주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가구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출20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②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③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④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⑤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기출20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기출20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1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p>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p>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p>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p>	<p>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이나 보건 업무에 대하여 보좌·지도·조언할 전문가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둔 규정이다.

2. 적용사업 및 사업장 규모

다음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제1항)

- ① 제조업
- ② 임업
-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담당자의 요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②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시행령 제25조)

-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⑥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참고사항

- 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둘 수 없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위한 16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29조 이하의 안전교육 참조)
- ②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24조제3항), 실제에 있어서는 본연의 “다른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안전보건 교육을 받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개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인적 요소이다. 안전관리자 등의 기술적인 지도·조언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도모할 수 없기에 둔 규정이다.